

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(제69조제3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가산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호에 따른 가중 및 제4호에 따른 감경을 하여 산정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이 부당이득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가산금은 부당이득금의 2배로 한다.
- 다. 2개 이상의 계약에서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(이하 "부당이득행위"라 한다)를 한 경우에는 계약별로 가산금을 산정한다.

2. 부당이득금 규모 및 비율에 따른 산정

가산금은 부당이득금 규모와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.

- 가. 부당이득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% 이상인 경우: 부당이득금의 2배
- 나.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이득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% 이상 20% 미만인 경우: 부당이득금의 1.5배
- 다. 그 밖의 경우: 부당이득금의 1배

3. 가산금의 가중

다음 각 목에 따라 가산금을 가중한다.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의 가중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며, 나목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부당이득행위에 대하여 가산금을 통보한 날과 다시 부당이득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- 가. 하도급자와 공모한 경우: 50% 가중
- 나. 최근 5년 이내 부당이득행위가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

1)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: 50% 가중

2) 적발 횟수가 2회인 경우: 30% 가중

4. 가산금의 감경

다음 각 목에 따라 가산금을 감경한다. 이 경우 나목은 적발된 부당이득행위 및 자진하여 신고한 다른 부당이득행위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.

가.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: 50% 감경

나.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된 후 다른 부당이득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: 30% 감경